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소방장비(안전장갑, 랜턴) 구입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¹²¹⁾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¹²²⁾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·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공급계약(이하 "다수공급자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」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가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

나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

또한, 「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」¹²³⁾ 제4조에 따르면 수

121) 대통령령 제27037호

122)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·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(1억원)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,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 구조장비(안전장갑, 랜턴)를 구입하면서 [표]와 같이 3~4차례에 걸쳐 납품 요구¹²⁴⁾함에 따라 납품요구 금액이 5천만원 내지 1억 원 미만으로 요구함으로써 2단계 경쟁 계약이 아닌 제3자 단가계약¹²⁵⁾이 체결하여 경쟁계약 낙찰률 대비 3천8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.

[표] 강원도 소방장비 구입 현황

(단위 : 천원,%)

품목	구입일자		내역	구입내역			경쟁입찰시 차액	비고
				사업비	낙찰률	도금액		
안전장갑	2015	2.2	단가계약	12,348	99.956	12,342	$46,347 - (48,976 \times 0.77834) = 8,227$	
		7.23		18,713	100.000	18,713		
		12.7		17,916	85.858	15,383		
		소계		48,976		46,437		
		2단계('15.12)		175,678	77.834	136,004		
랜턴	2015	1.22	단가계약	8,544	99.952	8,540	$80,170 - (80,170 \times 0.6028) = 29,760$	
		7.10		12,948	100.000	12,948		
		11.30		12,397	100.000	12,397		
		12.11		46,281	100.000	46,281		
		소계		80,170	100.000	80,170		
		2단계('13.8)		108,460	60.280	65,380		

* 자료 : 강원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피하고자 납품요구금액을 축소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23) 조달청고시 제2016-18호(2016. 5. 2., 일부개정)

124) 강원도 소방본부는 분할하여 납품 요구한 이유를 본예산, 추경예산, 집행잔액 사용 및 신규자 교육을 위한 적기구입으로 설명하고 있음

125)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·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(이하 "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